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707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6년 5월 26일
- 라. 회부일자 : 2026년 5월 27일

2. 제안이유

- 서울어울림체육센터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로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현행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서울어울림체육센터를 추가함(안 제16조제2항).
- 나. 현행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

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에 서울어울림체육센터를 추가함 (안 별표 1).

다. 현행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를 위해 개인사용료 및 전용사용료 금액의 범위를 신설함(안 별표 2, 별표 3).

라. 띄어쓰기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윤희)

가. 개정안의 개요

- 2026년 9월 개관 예정인 시립체육시설 서울어울림체육센터(이하 “어울림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한 것임.

나. 개정안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이하 “시립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조례는 시립체육시설 운영의 근거 및 기준이 되므로, 신규 시

립체육시설의 경우 개관 전 동 조례에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위치를 반영하여 다른 시립체육시설과 통일된 방식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9월 개관하여 운영될 어울림센터의 현황을 적기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운영의 위탁(안 제16조제2항제12호)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6조(운영의 위탁) ①·② (생략) 1. ~ 11. (생략) <u><신설></u> ③ ~ ⑨ (생략)	제16조(운영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u>12. 서울어울림체육센터</u> ③ ~ ⑨ (현행과 같음)

- 동 개정안은 체육시설 운영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시립체육시설에 어울림센터를 추가하는 것임.
- 어울림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형 체육공간이자 복지, 전문·생활 체육, 편의시설, 주차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시설 운영 사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안 별표 2, 별표 3)

- 시립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다

른 자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²⁾에 따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조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어울림센터의 각종 시설을 이용·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할 사용료를 이용 시설, 횟수, 시간별로 구분하여 이용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어울림센터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수영) 수강료는 인근 공공체육시설의 수강료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35%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남.

< 어울림센터 인근 공공체육시설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수영) 수강료 현황 >

(단위 : 원)

구분		월계구민체육센터 (노원구)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도봉구)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구)	서울숲 (성동구)	어울림센터 (하한 금액) (노원구)
수영	성인(월수금)	52,000	48,400	49,500	49,500	57,000
	성인(화목)	35,000	32,300	33,000	34,500	38,000
	어린이(월수금)	26,000	30,000	30,000	26,500	36,000
	어린이(화목)	17,600	20,000	19,900	17,500	24,000

- 1)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2) 제14조(사용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어울림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로서 이윤 창출보다 주민의 체육 복지 향상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우선시한 수강료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어문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임.
- 법제처가 발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입안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바, 조례안 입안 시 본문 내용이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시 법무담당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